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130
--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3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3년 8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23년 9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윤종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2조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2조의2)
- 회계는 교통관리계정·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(안 제4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부칙 제4조제2항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

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○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9조

제49조(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)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○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
제21조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정(計定)은 분리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‘특별회계’라 한다)의 존속기한이 “2023년 12월 31일”까지로 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회계 및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연장하는 한편 동 특별회계의 계정 중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을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·운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※참고1: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규정(2014.5.28.)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검토의견

■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관련

- 서울시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

등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9조1) 및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2)에 따라 1992년 10월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라 한다)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

-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의 난립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4년 5월 「지방재정법」 부칙 제4조제2항3)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18년 12월 31일”로 규정한 이후 지난 2018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음4)

동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“2028년 12월 31일”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-
- 1)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9조(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)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2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정(計定)은 분리하여야 한다.
 - 3) 「지방재정법」 부칙(2014.5.28.)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 - 4)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8년 9월 6일 상정·의결)

- 동 특별회계 예산은 '23년 기준 1조 6,703억원 규모로 3개 계정으로 구분⁵⁾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각 계정별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, 교통 분야 수입을 교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·운용되고 있음

※참고2: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항목

구분	교통관리계정	주차장관리계정	교통개선분담금계정
세입	1.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94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0조에 따라 사장이 부과한 과태료 4.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채납된 제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채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장수분 5.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. 국고보조금 7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.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에 따라 사장이 부과한 과태료 9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0. 그 밖의 수입금	1.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. 국고보조금 4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.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. 주차관련 수입금	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
세출	1.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.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업 3.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4.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체차(대폐차: 차량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)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5.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6.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	1. 주차환경개선사업 :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,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관리, 주차장 정보구축,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. 주차질서유지사업 :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,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,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.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. 노외주차장·부설주차장을 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·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.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6.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	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의 해당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

5)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4조(계정의 구분)

회계는 교통관리계정·교통개선분담금계정·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- 참고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⁶⁾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⁷⁾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음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속적인 교통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적된 바와 같이⁸⁾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

■ 특별회계 계정 통합 운영 관련

- 동 특별회계는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

6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) 재정담당관-6214('23.5.26.) “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”

-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: 원안가결

8) 재정담당관-6214('23.5.26.) “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”

※ 위원회 권고사항: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바람

설치·운영중이며 동 특별회계 내에서 3개 계정(교통관리계정, 주차장관리계정, 교통개선분담금계정)을 구분하고 있음

- 다만,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정비계획(안)⁹⁾에 따르면 3개 계정 중 교통관리계정은 재원이 부족하고 주차장관리·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잉여자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, 교통관리계정은 기금으로부터 부족자금 예수, 나머지 계정은 여유 자원을 기금에 예탁¹⁰⁾하는 등 불필요한 재무활동 및 이자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음
- 동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의 62%¹¹⁾가 ‘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’ 및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’으로 외부재원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금을 주고 받지 않아 불필요한 재무활동 및 이자 발생하고 있음

이에 따라 회계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계정 간 불필요한 재무활동 방지를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

9)교통정책과-7482('23.5.4.) '교통사업특별회계 정비계획(안)'

10) ▶'23년 현재 누적 예수금(기금 →특별회계) 총 7,565억원, 당해이자 83억원
▶'23년 현재 누적 예탁금(특별회계→기금) 총 3,856억원, 당해이자 42억원

11) 교통정책과-7482('23.5.4.) '교통사업특별회계 정비계획(안)
- 특별회계 재원 건전성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5년 평균
자체수입 비중	36.9%	46.3%	35.2%	34.9%	35.8%	37.8%
전입금 비중	52.2%	43.2%	51.5%	54.8%	52.0%	50.7%
예수금* 비중	10.9%	10.5%	13.3%	10.3%	12.2%	11.5%

- 또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내 세입 및 세출을 교통관리계정 조항 내 신설하는 것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
※참고3: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치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(교통사업특별회계 장부개혁안) 中

<존치평가>						
○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유효성						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
정책사업 비중	84.0%	84.5%	84.6%	86.2%	84.3%	
행정운영경비 비중	4.0%	3.4%	2.4%	2.0%	2.6%	
재무활동 비중	12.0%	12.1%	13.0%	11.8%	13.1%	
○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의 적정성						
- (세입) 최근 4년간 자체 평균수입은 6,911억원으로 일정 수입 지속 발생 중						
- (세출)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출예산 편성·집행 중						
○ 특수한 정책의 필요성						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한 법정회계						
- 중앙정부의 정책적 통일성을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유지 필요						
<운영평가>						
○ 특별회계 재원 건정성 “회계 자립성 낮음”						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5년 평균
자체수입 비중	36.9%	46.3%	35.2%	34.9%	35.8%	37.8%
전입금 비중	52.2%	43.2%	51.5%	54.8%	52.0%	50.7%
예수금* 비중	10.9%	10.5%	13.3%	10.3%	12.2%	11.5%
*예수금: 재정투융자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						
○ 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세입 징수 효율성 “집행률 저조, 징수율 양호”						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4년 평균
세출 집행률	88.1%	90.7%	89.6%	88.4%		89.2%
세입목표 달성률	101.5%	98.8%	98.9%	100.5%		99.9%
○ 특별회계 사업 효과성 “목표치 초과달성”						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4년 평균
성과목표 평균 달성률	115.1%	127.2%	91.1%	105.9%		109.8%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2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2조의2)
- 회계는 교통관리계정·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교통개선 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(안 제4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
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'23. 6. 15.~7. 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임고은 (☎2133-2217)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교통관리계정·교통개선분담금계정·주차장관리계정”을 “교통관리계정·주차장관리계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

제6조제2항제4호 중 “대폐차:”를 “代廢車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규정된 것 이외”를 “규정한 것 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세입·세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및 제6조,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으로 한다.

②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은 해당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의 해당 교통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제13조(준용) ----- 규정한 것 외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임고은 (02-2133-2217)